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

[서울고등법원 2023. 2. 15. 2022라20993]



【전문】

【신청인, 상대방】 파주시장 (소송대리인 김은희 외 5인)

【사건본인, 항고인】농업회사법인 벽초지수목원 유한회사(변경전 상호 : 농업회사법인 벽초지문화수목원 유한회사)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지평 담당변호사 황인영 외 2인)

【제1심 결정】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. 9. 13.자 2022비합5014 결정

【주문】

]

- 1.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.
- 2. 이 사건 해산명령청구를 기각한다.

【신청취지 및 항고취지】 1. 신청취지: 사건본인 회사를 해산한다. 2. 항고취지: 주문과 같다.

【신청취지 및 항고취지】 1. 신청취지: 사건본인 회사를 해산한다. 2. 항고취지: 주문과 같다.

【이유】

1. 기초사실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결정문 이유 '1. 기초사실'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,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,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[이유]

1. 기초사실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결정문 이유 '1. 기초사실'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,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,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